

日帝下 農民運動展開에 관한 研究

—小作爭議運動을 中心으로—

朱 奉 圭*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農民運動發生의 根據
- III. 農民運動의 展開
- IV. 要 約

I. 問題의 提起

日帝下에 不斷히 繼續되어 온 抗日民族運動은 그 特徵에 따라 크게 分類하여 二期로 大別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 第一期는 1905년부터 1919年 第一次 世界大戰 直後 3.1運動에 이르기까지 一聯의 抗日運動을 總括하는 時期이고, 그 第二期는 3.1運動을 契機로 하여 1930年에 이르기까지의 一聯의 抗日民族運動을 總括하는 時期이다.

第一期에 있어서의 民族運動의 特徵은 一聯의 諸般運動이 民族的 感情의 自然發生의인 爆發로서 舊來의 指導層이 中心이 되어 展開되었다는 데 있고 第二期의 民族運動의 特徵은 舊指導層의 運動拋棄와 勤勞大衆 및 農民, 學生을 土臺로 한 民族的 組織에 의하여 그 運動이 자못 本軌道에 오르고 組織的이며 強靱한 鬭爭으로 發展되었다는 데 있다.

이렇게 볼 때 3.1運動을 契機로 그 以後의 民族運動은 完全히 勞動者 및 農民 그리고 學生에 의하여 擔當되고 過去의 示威的인 爆發이란 性格을 脫却하여 強한 組織的인 運動으로 發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農民을 母體로 한 農民運動은 곧 小作爭議運動으로 標榜된 바 있었다는 歷史的 事實에 우리의 關心을 集約케 하고 있다.

本研究의 目的은 日帝下 農民을 母體로 한 農民運動의 徵表로서의 小作爭議運動展開에 關한 內容을 解明함으로써 農民運動에 關한 歷史的인 意義를 定立함에 있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農業經濟學科 教授

II. 農民運動發生의 根據

農民을 母體로 한 農民運動의 徵表로서의 小作爭議運動의 發生은 土地調査事業 以後 韓國에 있어서의 土地所有의 獨特한 類型을 形成케 하였다는 事實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것은 곧 日本人 土地所有의 顯著한 樣相에 있어서 土地所有 그것이 舊來의 韓國人 地主의 境遇에 比해서 더 한층 苛酷하고 또한 巨大한 規模로 集中되어 있었다는 事實에서 그러하다.

日帝下 土地調査事業이 完了된 以後 즉 1921년에 100町步 以上の 地主數 681名 가운데 韓國人 土着地主數는 360名이고 日本人 地主가 321名이었으나 年次를 거듭함에 따라서 그 總數도 增加되어 1933년에 이르러서는 716名에 達한 바 當時 韓國人 地主는 308名으로 漸減된 反面에 日人地主는 406名으로 漸增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町步 以上の 地主構成에 있어서도 1921年의 韓國人 地主數는 66名이고 日人 地主는 169名이었으나 1933年에 이르러서는 韓國人 地主는 43名으로 漸減된 反面에 日本人 地主는 192名으로 漸增케 된 事實을 알 수 있다.⁽¹⁾

한편 日帝下 土地調査事業 以後에 있어서 地主와 小作人의 動態를 살펴보면 地主의 累增에 對應하여 自作農의 減少에 따른 自小作 및 小作農의 增加傾向을 뚜렷이 알 수 있게 된다. 즉 自小作 및 小作農의 合計로서 나타난 總體的인 比率는 실로 76~77%의 놀라운 壓倒的인 優勢의 數字에 達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²⁾

위와 같이 地主의 增加에 對應한 小作農의 增加樣相은 바로 小作生産關係의 徵兆가 되어 있었거니와 그러한 가운데 地主의 小作農에 對한 小作料의 高率化傾向은 始終 發展의으로 形成·展開되고 있었다.

日帝下 地主制度에 있어서 地主가 小作農으로부터 小作料를 徵收하는 方法에는 ① 定租法, ② 打租法, ③ 執租法의 세가지 類型이 있었다.⁽³⁾ 定租·打租 및 執租法에 의한 小作料의 生産量에 대한 比率는 高率的인 것이었고 그 밖에 運搬費 및 包裝費 그리고 小作人의 家事勞動, 土地收取費, 公課負擔 등 附隨的 諸負擔이 小作人에 對하여 賦課되는 加速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日帝下 地主의 土地兼併이 進行됨에 따라서 不在地主의 土地管理者인 舍音의 小作人에

(1)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發達編), 1944, 附錄 第4表 參照.

(2) 朱奉圭,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의 歷史的 意義에 關한 研究」, 『東亞文化』, 第14輯(1977. 12), p. 340.

(3) 朝鮮農會, 『朝鮮의 小作慣行』(時代と慣行), 1930, pp. 273~274.

對한 中間搾取의 橫暴가 甚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地主를 籠絡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 地主의 威勢를 빌어서 妙한 方法으로 小作人을 弄奸함이 一般的이었다. 그리하여 舍音은 地主와 小作人의 中間에 介在하여 地主를 代身하는 權勢를 惡利用하여 小作人에게 苛斂誅求와 橫暴를 極甚하게 하고 있었으니⁽⁴⁾ 高率의 小作料와 舍音의 中間搾取 속에서 小作爭議의 社會的 經濟的 提起는 하나의 必然的인 所産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日帝下 舍音의 任務로서는 ① 小作料의 收取·保管·運搬 및 賣却, ② 納稅의 代理, ③ 小作人의 監督 ④ 土地의 修繕이었고⁽⁵⁾ 그 밖에 또한 ① 土地事務에 대한 地主代理, ② 小作人의 監督, ③ 作人의 黜陟, ④ 小作料의 査定·徵收 및 保管, ⑤ 種子의 保管, ⑥ 地主와 小作人間의 連絡 등에 있었다.⁽⁶⁾

舍音의 任務에 對한 反對給付로서 報酬로서는 ① 小作料 收納量에 대응하여 그 幾分을 받는 것으로 그 比率은 100분의 1내지 100분의 5를 보통으로 하는 것, ② 自己가 소지하는 土地의 小作料를 輕減받는 것, ③ 一定 土地를 無償으로 耕作하는 것 등등이 있었고, 또한 ① 地主로부터 支給되는 것, ② 小作人으로부터 支出되는 것, ③ 地主·小作人共同으로 支出되는 것 등이 있었다.⁽⁷⁾ 한편 舍音存立에 따른 利害得失로서는 ① 小作人을 任意로 變更하고 自己의 親戚, 知己 등에 便宜를 提供하기 위하여 小作人의 生活을 威脅하고 있었다. ② 地主와 契約하는 以外에 故意로 小作料를 높이고 또는 小作料 徵收의 경우 故意로 收量을 增加시키고 있었다. ③ 徵收한 小作料를 賣却하는 경우 一定 場所까지의 運搬을 負擔시키고 있었다. ④ 自己가 徵收한 小作料보다 더 나쁜 버를 地主에게 納付하고 있었다. ⑤ 小作料 徵收의 경우 各種各樣의 名目으로 小作人으로부터 金品을 收取하고 있었다는 등등 이었다.⁽⁸⁾ 또한 舍音의 弊害에 對하여 ① 小作料를 增加시키고 있었다. 즉 小作料 收納量의 一定部分을 報酬로서 支給받는 舍音은 報酬增加를 期하기 위하여 小作料를 增徵하는 것이었다. ② 恣意로 小作人을 變更시키고 있었다. 즉 不定期小作이 一般化되어 있었으며 더우기 舍音에 小作契約의 解除權이 賦與되어 있음으로써 그의 權限을 濫用하며 小作人의 贈與의 多寡에 依存하여 小作人을 變更시키고 있었다. ③ 農業發達을 阻害시키고 있었다. 즉 小作人을 詰求하며 小作契約解除의 不安을 주어 小作人의 土地改良, 其他施設을 하는 餘裕를 주지 않아 營農意慾을 滅殺시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優良品種의 普及을 妨

(4) 朱奉圭, 『韓國農業經濟史研究』, 1980, p. 216.

(5) 朝鮮農會, 『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 1930, p. 282.

(6) 朝鮮總督府 殖産局, 『小作農民に關する調査』, 1928, pp. 150-151.

(7) 朝鮮農會, 『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 및 『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1944, pp. 483-486.

(8)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1944, pp. 528-529.

害함으로써 農業發達을 스스로 阻害케 하고 있었다.⁽⁹⁾ 舍音, 其他 小作地 管理者를 기초로 한 弊風은 甚刻한 것이었고 따라서 農地令 發布의 主要 目的도 이 弊風의 矯正에 있었으며 이 弊風은 朝鮮에 있어서 小作慣行의 癥의 存在이었다.⁽¹⁰⁾ 京城의 富豪는 그 대부분이 소위 不在地主階級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 現象은 비단 京城에 限한 것이 아니고 全朝鮮 各都市가 모두 大同小異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들 不在地主로 말미암아 發生하는 社會問題로서는 대개 세가지를 들 수 있으니 農村疲弊問題, 邑面財政不健全問題, 舍音制度에 의한 小作料 過重問題가 그 가운데 重要한 것이었고, 이상 3大弊害 가운데서 가장 重要하고 切迫한 問題요 따라서 世人의 가장 큰 關心을 끄는 問題는 舍音制度에 의한 過重한 小作料 徵收問題이다. 舍音制度란 만드시 不在地主들로 말미암아 생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不在地主가 생긴 후로 그 수가 激增되었으며 또 地主의 不在를 틈타서 그들이 더욱 橫暴를 恣行하는 事實도 默過하여도 좋을 程度가 아니거니와 元來가 舍音이란 小作人에 대하여 中間 搾取하는 存在로 되어 있었다.⁽¹¹⁾

위의 같은 狀況과 小作條件의 極端의인 不合理 속에서 小作農民의 悲鳴은 高潮케 되었으며 그것은 마침내 小作爭議로 昇華되었다. 이에 小作爭議는 小作料減免을 비롯한 모든 小作條件改善을 要求하며 그를 貫徹키 위한 運動으로서 實質化되었다.

이에 日帝 自體는 小作爭議運動의 展開에 惶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小作爭議의 根本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諸般方案을 講究한 바 있었으니 그 가운데 1927년에 全國 各道에 걸쳐 6百戶의 自作農을 創設키로 하는 所謂 自作農創設事業⁽¹²⁾과 同年 12월에 小作 爭議調停令⁽¹³⁾을 발포하였고 1928年 3月에는 臨時小作調查委員會를 設置하고 小作慣行의 改革案을 計劃·樹立한 바 있었다. 즉 ① 書面契約의 勸獎, ② 小作料引上 및 小作權移動의 制限, ③ 小作地轉貸의 制限, ④ 繼續的 小作의 勸獎, ⑤ 小作權相續의 保障, ⑥ 小作料滯納에 대한 猶豫勸獎, ⑦ 定額小作料制의 實施勸獎, ⑧ 小作料運搬費負擔의 調整, ⑨ 公定小作料의 策定, ⑩ 舍音의 弊害防止 등등의 方策이 있었으나, 事實인즉 이것은 法的인 措置를

(9) 田邊勝正, 『土地制度研究』, 1938, pp. 338-339.

(10)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1944, p. 655.

(11) 『朝鮮日報』, 1939年 4月 12日字.

(12) 自作農創設事業計劃이란 農村經濟更生의 實績을 擧揚코자 함에 目的을 두고 樹立된 計劃을 말한다. 이는 自作農의 漸減을 防止하며 兼하여 農村思想의 善導를 期하고자 하는 意中에서 樹立된 計劃을 말한다.

(13) 朝鮮小作調停令은 日本의 同類法에 根據하되 大概 다음과 같은 要旨의 것이었다. ① 地主·小作人間에 小作料 其他小作에 關한 爭議를 보았을 때 當事者의 申告에 의하여 法院에서 調停하되 ② 調停事件이 府郡島의 小作委員會에 附議시켜 調停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러한 措置를 取하여 結果를 보되 ③ 調停成立은 裁判上의 和解와 같이 取扱되고 드디어 調停을 보지 못하면 물론 民事訴訟件이 될 수 있다. 司法機關이 民事의 調停에 나선 것은 韓國에 있어서 이 小作爭議의 嚆矢라 할 수 있다. 實際 相當한 件數의 處理를 본 바 있었다.

取한 것이 아니라 1片的 通牒에 依據한 手法의 것이었기 때문에 當初부터 實效를 거두기 困難하였던 方法이었으며 그후 各道에 小作官을 配置하여 小作紛糾의 調停을 專擔시키는 方案을 追加시키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하나의 糊塗策에 不遇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위와 같은 法的 措置나 方案講究로서 小作爭議의 原因을 芟除하고 事態를 根本的으로 求할 수는 到底히 없었던 것이다.

III. 農民運動의 展開

農民運動의 主軸이 되어 있었던 小作爭議運動은 1920년에 南部地方에 있어서 小作料의 減額要求 또는 運搬費의 引下要求 등을 原因으로 하여 發生된 爭議를 端緒⁽¹⁴⁾로 하여 朝鮮에 있어서 그것이 最初로 그 面貌를 나타내게 되었고 그 후에 年次를 거듭함에 따라서 顯著하게 擴大 展開된 바 있다.

1920年 當初에 15件에 不遇하였던 小作爭議가 燎原의 불길과 같이 全國적으로 擴散 波及되어 1923년에는 176件에 達하게 되었고 1937년에 이르러서는 31,799件의 記錄을 보이는 가운데 農民運動의 一環으로 크게 發展하였으며 그것은 規模와 原因에 따라서 區區한 樣態로서 消長을 보인 바 있었던 것이다(〈表 1〉 參照).

〈表 1〉 年度別 小作爭議發生件數

年 度	件 數	年 度	件 數	年 度	件 數	年 度	件 數
1920	15	1925	204	1930	726	1935	25,834
1921	27	1926	198	1931	676	1936	29,975
1922	24	1927	275	1932	300	1937	31,799
1923	176	1928	1,590	1933	1,975	1938	22,596
1924	164	1929	423	1934	7,544	1939	16,452

資料：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農地年報』, 第一輯, 1940, pp. 5~6.

한편 小作爭議運動의 原因別 動態를 살펴보면 小作權 또는 小作地關係가 그 最大 原因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도 小作權 移動의 反對 즉 小作權 繼續을 위한 爭議原因이 主軸이 되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表 2〉 參照).

小作爭議原因의 主軸을 이룩하고 있었던 小作權 移動으로 發生된 小作爭議가 1925年 4月 한달 동안에만도 無慮 9件이나 發生되고 있었으며 그것은 地主를 殺戮⁽¹⁵⁾ 또는 地主 집에

(14)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1944, p. 525.

(15) 『東亞日報』, 1925年 6月 28日字.

〈表 2〉小作爭議原因別 發生動態

道 別	原因別		小作權 又は 小作地關係				小 作 料 關 係					語 費 用 負 擔			其 他			
	確 認	繼 續	小作權 繼 續	小作權 回 復	小作權 土 地 渡 讓	其 他	計	小 作 料		關 係		公 司	租 課	水 費		特 殊 費 用	其 他	計
								小作料 確 認	小作料 繼 續	小作料 決 定 立 法 變 更	小作料 上 法 變 更							
京 畿	4	607	5	33	4	653	3	3	3	1	44	—	—	2	—	2	700	
忠 北	62	791	41	29	17	940	12	7	2	—	104	—	—	—	—	—	1,044	
忠 南	177	732	70	104	25	1,108	9	57	8	3	114	2	3	—	—	—	1,227	
全 北	249	485	234	37	22	1,027	20	1	—	—	182	6	—	—	—	—	1,215	
全 南	231	1,774	321	159	24	2,509	196	349	6	4	1,057	36	—	—	—	1	3,908	
慶 北	586	862	152	34	109	1,743	31	167	5	8	300	21	2	—	22	45	2,089	
慶 南	320	869	320	68	18	1,595	68	43	15	3	358	—	—	1	—	3	1,956	
黃 海 道	35	594	16	11	5	661	28	9	14	—	117	—	—	4	—	5	783	
平 南	333	619	36	113	36	1,137	29	3	31	—	311	10	5	23	—	38	1,486	
平 北	10	518	1	18	—	547	4	18	26	—	76	—	—	3	—	3	606	
江 原 道	72	710	152	64	10	958	67	6	34	—	144	—	—	—	—	—	1,102	
咸 南	142	200	57	4	—	403	28	5	4	4	167	3	2	31	10	46	616	
咸 北	—	—	—	—	—	—	—	—	—	—	—	—	—	—	—	—	—	
合 計	2,221	8,761	1,405	624	270	3,281	1,411	617	171	84	2,974	16	72	69	33	190	16,452	
百 分 比	13.5	53.3	8.5	3.8	1.6	18.7	8.6	3.8	4.1	0.5	18.1	0.2	0.4	0.4	0.2	1.2	100.0	

資料：朝鮮總督府 農林局，『朝鮮農地年報』，第一輯，1940，p. 525.

放火⁽¹⁶⁾ 그리고 小作人 自身の 自殺⁽¹⁷⁾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 밖에 小作權의 頻繁한 移動에 對하여 小作人들은 小作組合·農會 등을 통하여 小作權 保障을 主張하되 公認될 만한 過失의 경우 以外の 契約解除에는 絕對 不應할 것에 對한 要求內容⁽¹⁸⁾으로 나타났으며 小作能率을 위하여 小作期間은 最小限 5年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는 要求主張⁽¹⁹⁾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地域別로는 耕作地가 많고 日本人 農場이 많이 分布되어 있었던 全羅南道 地方에서 小作權移動의 原因에 따른 小作爭議의 發生動態가 甚하였고 全羅南道の 荷依島⁽²⁰⁾, 梅花島⁽²¹⁾, 都草島⁽²²⁾, 慈恩島⁽²³⁾, 智島⁽²⁴⁾, 岩泰島⁽²⁵⁾ 등의 島嶼地方에서 發生된 小作爭議가 그 代表的인 例證이 되고 있었다. 平南地方에서는 小作爭議發生의 70.4%가 小作權移動에서 비롯되었던 것이고 이 경우 龍川不二興業株式會社 西鮮農場 小作人和 農場主 사이의 葛藤으로 인한 것이었고⁽²⁶⁾ 期間도 1925年 對羅面 小作爭議에서 1932年 龍川小作組合 解體時까지에 걸쳐서 無慮 8年間이나 持續的으로 惹起⁽²⁷⁾된 바 있었으며 또한 鳳山郡과 載寧郡에 東拓所有地가 比較的 많이 分布되고 있는 黃海道地方의 小作爭議⁽²⁸⁾는 東拓이 契約 完了後 小作權 更新時 耕作時期에 있는 小作權을 박탈하여 日本移民에게 移動시킨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²⁹⁾

그리고 小作爭議의 發生原因인즉 高率小作料에 따른 小作料의 低減要求 및 減免要求가 主된 것이 되어 있었다. 대개의 경우 小作料는 全體 收穫高의 50% 内外를 徵收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公課金 諸稅 등을 包含하면 60~70%를 훨씬 넘는 高率的인 것이 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小作人들은 小作料를 平年作인 경우 收穫高의 40%⁽³⁰⁾乃至 50%⁽³¹⁾ 線으로

(16) 『東亞日報』, 1928年 2月 15日字.

(17) 『東亞日報』, 1932年 1月 13日字.

(18) 『東亞日報』, 1924年 1月 24日字에서 同紙 1933年 5月 30日字까지 모두 21件.

(19) 『東亞日報』, 1924年 1月 24日字에서 同紙 1933年 5月 30日字까지 小作能率向上을 위한 小作期間의 最小限은 5年 以上으로 하고 이것을 主張하는 農會小作組合에 關하여 言及된 新聞記錄은 모두 19件이다.

(20) 『東亞日報』, 1928年 2月 19日~27日字.

(21) 『東亞日報』, 1928年 9月 20日~30日字.

(22) 『東亞日報』, 1925年 10月 28日字.

(23) 『東亞日報』, 1925年 10月 28日字 및 同年 8月 21日字.

(24) 『東亞日報』, 1925年 3月 11日字 및 同年 4月 27日字.

(25) 『岩泰島小作爭議』, 『新東亞』, 1969年 9月號.

(26) 『東亞日報』, 1929年 4月 23日字부터 同紙 1932年 11月 9日字까지 모두 15件.

(27) 趙東杰, 『日帝下韓國農民運動史』, 1979, pp. 126-132.

(28) 權斗榮, 『韓國近代史論 III』, 1978, pp. 171-179.

(29) 『東亞日報』, 1924年 11月 6日字부터 同紙 1931年 3月 27日字까지 모두 141件이 言及되어 있다.

(30) 『東亞日報』, 1922年 9月 9日字부터 同紙 1932年 3月 18日字까지 小作權確立에 關한 記事中 小作料 40%를 主張하는 關係記事는 모두 23件에 이르고 있다.

(31) 小作料를 最高 50%까지 主張하는 記事는 『東亞日報』, 1925年 2月 14日字부터 同紙 1931年 12月

할 것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現在 實施되고 있는 小作料率이 50% 以上인 것에 對한 小作料 引下를 要求⁽³²⁾하는 등 強硬하게 맞서는 가운데서의 것이었다.

小作爭議發生原因의 하나는 小作權繼續의 爭議와 小作期間의 短期化에서 나타났다. 小作 期間은 地主와 親戚關係를 갖는 小作人이라든가 또는 果樹園 등을 經營하는 小作人등 極히 例外的인 경우를 除外하고서는 1年이 通例가 되어 있었고 1個年間을 小作期間으로 定하여 小作關係가 이룩되고 있었던 比率은 全體의 70%를 上廻하고 있었으며 小作期間의 內容을 道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³⁾

京畿道 : 3~5年이 一般的으로 되어 있지만 20~30年을 同一한 土地에서 小作하는 경우도 있다. 地主·小作人間의 相互 利害關係로 因해 1~2年으로 그 期間이 점차 短縮되는 現狀이다.

忠清北道 : 期間이 定해지지 않고 地主의 意思에 따라 隨時로 契約이 解除되고 있다. 報恩·丹陽郡 一帶는 1年으로 期間이 約定되어 每年 契約을 更新하고 있다.

忠清南道 : 口頭契約은 期間의 規定이 없고 地主·舍賚의 意思에 따라서 決定된다. 證書契約은 보통 3~5年으로 規定하고 畓은 3~6年, 田은 畓보다 길지만 期間中이라도 小作人이 不誠實하면 小作權은 移動된다.

全羅北道 : 最下 1年 普通 3~5年이고 긴 것은 2~3代 繼續해서 小作을 하는 경우도 있다.

全羅南道 : 最短 1年, 普通 3年이며 最長 5~10年이나 地主·舍賚의 任意에 의하여 契約은 持續되기도 한다.

慶尙南道 : 最短 1年, 普通 3年, 最長 5年이며 期間이 定해지지 않는 狀態에서는 最短 1年, 普通 10年, 길면 數代를 繼續해서 小作하기도 한다.

黃海道 : 最短 1年, 긴 것은 地域에 따라서 다르다. 載寧地方은 50年, 海州·鳳山·瑞興地方은 30年, 延白地方은 24年, 新溪·長淵地方 10年, 安岳·信川地方은 대개 5年이며 地主 또는 舍賚에 의해 小作權이 移動된다.

平安南道 : 最短 1年, 普通 3年, 最長 4~5年으로 하고 地主·小作人의 相互 衝突이 없으면 永小作도 가능하다.

平安北道 : 最短 1年, 普通 3~5年이며 10年이 一般的이며 그 以外의 規定은 平安南道와 같다.

江原道 : 最短 1~3年, 普通 3~5年이며 10年 以上은 永小作할 수 있다.

咸鏡南道 : 普通 1~4年이며 特別히 播種期 以後에 地主가 바뀔 때에는 當年만 耕作權을 移動하고 다음 해부터는 原狀대로 回復한다.

咸鏡北道 : 普通 1年이나 契約 滿了後 再契約을 하므로 實際적으로 永小作과도 같다.

14日字까지 모두 12件으로 되어 있다.

(32) 小作料減免要求의 代表的인 小作爭議는 務安郡 및 報恩郡 小作爭議, 梁山郡 東拓小作人 中心의 抗爭, 慶南 固城郡 學林, 永縣 小作爭議, 載寧郡北粟 小作爭議, 鳳山郡舍人 小作爭議, 龍川郡 不二農場所在地에서의 小作人들의 抗爭 등이 있다.

(33)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習』, 1930, pp. 180-185.

小作期間의 問題는 不定期와 定期別의 內容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不定期小作과 定期小作이 行하여지는 範圍를 畚·田·菜園別로 살펴볼 때 不定期 및 定期의 小作關係에 있어서 菜園의 경우만 對等한 比率의 것이었고 畚과 田에 있어서는 不定期小作이 絶對인 것이 되고 있었다.⁽³⁴⁾

무엇보다도 小作期間의 短期化 및 不定期小作의 支配의인 樣相은 地主가 언제든지 小作을 解約할 수 있는 解除權을 保有하고 있는 以上 地主에 있어서는 每年 解除를 理由로 小作料를 增徵할 수 있으므로 小作人은 甚히 不安한 地位에 놓여 있었고 이에 따라 農地改良 및 施肥 등을 等閑히 함으로써 掠奪農業을 行하고 地力을 枯渴시켜 農業發展을 阻害하는 條件으로 作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小作權移動은 小作人間에 小作權爭奪을 不斷히 激化시킨 바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地主는 極히 有利한 小作契約이 可能케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小作人을 收奪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서 小作人의 生活狀態는 極度로 悲慘한 狀態에 達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世變俗移하여 個人主義와 資本主義가 우리 社會에 澎湃함에 따라서 地主對 小作人關係는 經濟的인 爭奪을 위한 角逐的인 事態로 變하고 말았던 것이며 이것이 所謂 小作爭議로 昇華 發展케 되었고 이에 따라 小作爭議運動은 마침내 日帝下에 農民運動의 先驅를 이루는 劃期的인 主體意識의 發露로 浮刻된 바 있었다. 그것은 1922年 서울에서 結成된 小作人相助會를 筆頭로 朝鮮農民總同盟 그 밖에 各地方에 組織된 小作人組合이 母體가 되어 實質化된 바 있었다.⁽³⁵⁾

忠北地域의 小作人相助會에서 提示된 要求條件內容⁽³⁶⁾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地稅·其他의 公課는 全部 地主負擔으로 할 것, ② 小作料는 折半으로 할 것, ③ 小作料의 收納計劃方法을 改正할 것, ④ 小作年限을 延長할 것, ⑤ 小作人의 小作料運搬距離를 短縮할 것, ⑥ 小作地 修理費의 小作人負擔을 輕減할 것, ⑦ 舍音 그 밖에 小作管理人的 年稅 및 無償勞動要求를 廢止할 것 등등이었고 1922年 全南의 小作人相助會에서 提示된 要求條件 內容인즉 ① 小作料는 收穫高의 4割로 할 것, ② 地稅·公課는 地主의 負擔으로 할 것, ③ 小作料의 計量에는 斗斛을 使用할 것, ④ 地主는 無償으로 小作人을 使用하지 말 것, ⑤ 1里 以上의 小作料 運搬費는 地主의 負擔으로 할 것, ⑥ 地主는 小作人과 融和親善을 圖謀하며 小作人을 蔑視하지 말 것, ⑦ 小作權을 任意로 移動하지 말 것, ⑧ 地主는 非常識的인 舍音을 使用하지 말 것, ⑨ 天災地變에 의한 土地의 復舊費는 地主의 負擔으로 할

(34) 田邊勝正, 『土地制度研究』, 1938, p. 333.

(35) 金森襄作, 「朝鮮勞動共濟會について」, 『朝鮮史叢』, 第3號(1980年 6月), p. 252.

(36)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1944, pp. 532-533.

것 등등 이었다.

全南 順天郡 雙岩面에서는 1922年 12月 20日에 小作農民 1,000餘名이 面事務所에 雲集하여 다음과 같은 要求條件을 提示하면서 그의 貫徹를 固執한 바 있었다.⁽³⁷⁾ 즉 ① 小作料는 地稅·公課金과 모든 農事費用을 除하고 地主·小作人이 半分할 것, ② 小作權을 합부로 移動치 말 것, ③ 小作人에게 勞賃支拂의 代價 없는 勞動을 使役치 말 것, ④ 小作料의 運搬은 一里 以內로 할 것, ⑤ 天災地變으로 因한 費用은 地主가 負擔할 것 등이었다.

慶尙南道 地域에서의 朝鮮小作人相助會에서 提示된 要求條件內容⁽³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① 小作人의 人格尊重, ② 小作料의 減免, ③ 舍音制度의 撤廢 또는 改善, ④ 中間小作의 廢止, ⑤ 小作期間의 延長, ⑥ 肥料의 補助, ⑦ 小作權의 安定, ⑧ 地稅公課의 地主負擔 등으로 되어 있었다.

黃海道 鳳山郡 西鍾面 興壽里와 東屯里에서는 1922年에 小作人和 農監間의 衝突事件이 發生되었던 것이며 特히 東屯里와 津曲里에서는 農民들이 集團적으로 鳳山郡廳에 물러가 凶作을 不拘하고 小作料를 徵收하려 하니 生計에 威脅을 받아 生活에 困苦를 느끼게 한다는 陳情과 그에 對한 對策을 講究 措處해 달라는 要求條件⁽³⁹⁾을 提示하기도 하였다.

京畿道 水原郡 綿南面에서는 1922年 11月에 東洋拓殖株式會社 小作人들이 農監의 橫暴에 대하여 連署로 告發한 事件⁽⁴⁰⁾이 있었으며 同年 12月에는 忠淸北道 槐山郡內의 小作農民들이 各各 小作人組合을 結成하고 公課金の 地主負擔, 小作料의 一里 以上 運搬은 地主가 負擔할 것, 二毛作의 收穫物에 對하여서는 小作料를 徵收치 말 것 등의 要求條件⁽⁴¹⁾을 提示하면서 小作爭議를 惹起시켰다.

1923年에 이르러 小作爭議의 樣相은 鬭爭의 運動 및 階級的 對立運動의 性格으로 變貌된 가운데 展開된 바 있다. 그 一例가 곧 1923年 10月에 慶尙北道 榮州郡 豐基의 小作組合에서 나타난 動態에서였다. 즉 豐基의 小作組合은 豐基勞動共濟會館에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다음과 같은 事項들을 決議하였다. 그리하여 一般大衆은 極度로 緊張하며 今秋에는 기여히 目的을 貫徹하도록 奮闘努力하고자 더욱 團結을 鞏固히 하기로 盟誓하였다는 것으로 그의 討議內容인즉 ① 地稅는 全部 小作料 5割 以上을 絕對 不應할 事, ② 地主가 우선 無理하게 小作權을 移動할 時는 一般 小作人은 結束하여 小作權擁護를 主張하고 어떠한 小作

(37) 『東亞日報』, 1922年 12月 26日字.

(38)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1944, p. 533.

(39) 『東亞日報』, 1922年 4月 25日字 및 9月 19日字.

(40) 『東亞日報』, 1922年 11月 20日字.

(41) 『東亞日報』, 1922年 12月 26日字.

人이든지 耕作지 말 것 등등의 強硬한 態度의 것이었다. (42)

1923年 봄에는 順天郡 樂安面과 海龍面, 黃田面 등등에서 地主들의 不當한 小作權 移動에 抗議하는 運動이 展開되었다. 黃南面에서는 小作農들이 地主에게 빼앗긴 小作權을 強制로 回復할 目的으로 德材里, 月山里, 船邊里, 回龍里 등지에서 集團의으로 共同苗床을 만들고 共同播種을 함으로써 集團의 抵抗意志를 行動으로 表示한 바 있었다. 그러한 1923年 가을에는 順天郡 雙岩面·西面·順天面·海龍面 등지에서 地主들이 小作料를 不當하게 많이 徵收하는 데 對抗하여 小作料 不納同盟, 小作料 留保同盟 등을 結成하여 鬭爭하였다. (43)

1923年 4월에 順天郡 西面に 있어서는 順天郡 農民聯合會가 創立되어 小作料는 4割 以內로 할 것을 決議한 以來 많은 地主들이 이 決定에 順應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몇몇 地主들이 繼續해서 4割 以上の 많은 小作料를 要求하는 데 反撥한 많은 小作農民들이 모임을 갖고 小作料를 4割 以內로 再調整하지 않는 限 小作料 納入을 拒否할 것, 小作料의 斗量은 地主나 地主代理人의 立會下에 하되 一般小作人이 함께 立會할 수 있는 小作人의 洞里에서 할 것 등의 決議를 다짐하며 地主에 對抗한 바 있었다. (44)

1923年 6월에 全州에서는 全州小作相助會가 中心이 되어 小作權移動에 反對하는 鬭爭을 展開하였는데 200餘 農民들이 公會堂에 모여 鬭爭方法을 論議하고 小作權喪失乞人團을 만들어 各地主의 집을 集團의으로 訪問하여 行動하도록 하였는데 地主住宅을 찾아가는 200餘 農民들은 警察의 制止로 數時間 동안이나 옥신각신하다 解散한 事件이 있었다. (45) 그리고 全北 益山郡에서도 1923年 5月 18日에 200餘名의 小作人이 相助會 臨時會館인 裡里 天道教堂에 雲集하여 小作權 回復을 위한 籠城鬭爭을 展開한 바 있었다. (46)

1923年 1월에 黃海道 安岳郡 大原面 農民 800餘名이 小作權 移動에 反對하는 陳情運動을 展開한 바 있었으며 (47) 10월에는 龍門面에서 從來의 永賭租를 打作制로 하겠다는 地主의 要求에 反對하는 爭議가 展開되었다. (48) 同年 3月 鳳山郡 舍人面에서도 一部 農民들이 小作權을 剝奪당한 데 反撥하여 小作權을 剝奪당하지 않은 一般小作人들까지도 그 地主가 小作權移動을 取消하지 않는 限 그 地主의 土地에 대하여 小作하지 않겠다는 對抗 속에서 鬭爭

(42) 朱牽圭,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의 歷史的 意義에 關한 研究」, 『東亞文化』, 第14輯(1977年 12月) p. 352.

(43) 『東亞日報』, 1923年 5月 7日字 및 10月 15日字.

(44) 『東亞日報』, 1923年 10月 23日字.

(45) 『東亞日報』, 1923年 6月 9日字.

(46) 『東亞日報』, 1923年 5月 12日字.

(47) 『東亞日報』, 1923年 1月 4日字.

(48) 『東亞日報』, 1923年 10月 25日字.

을 展開시킨 바 있었다. ⁽⁴⁹⁾

1923年 3월에 忠南 大田郡 外南面に 있는 小作農民들이 地主가 地稅를 徵收키 위하여 集合된 場所에서 一切히 地稅의 地主負擔을 要求하는 示威를 敢行한 바 있었으며 ⁽⁵⁰⁾ 忠南 論山郡에서는 6月 移秧時期에 小作權의 移動을 要求하는 地主의 要求에 反對하는 爭議를 일으켜 그를 貫徹시킨 바 있었다. ⁽⁵¹⁾

1923年 1月 8일에 順天郡 住巖面에서는 500餘 小作農民이 會合하여 小作總會를 構成 發動 ⁽⁵²⁾케 하고 同 11月에는 順天郡 外西面の 小作農民들은 農民大會의 期成會를 組織 結成 ⁽⁵³⁾ 하였으며 14日에는 同郡 西面の 小作人들이 農民大會 創立總會를 가졌다. ⁽⁵⁴⁾ 그리고 같은 날 同郡 東草面 小作人들은 寶城郡 筏橋里의 小作人들과 더불어 1,500餘名의 農民들이 雲集하여 聯合小作人相助會를 組織 ⁽⁵⁵⁾ 하였으며 2月 7日에는 同郡 松光面 小作農民들 500餘名이 雲集하여 小作總會를 結成한 바 있었다. ⁽⁵⁶⁾

1923年 봄에 忠北 槐山郡에서는 小作人 組織이 活潑하게 展開된 바 있었는데 特히 進豐面・長進面・七星面・甘旬面 및 沼尋面 등등 6個面에서 小作人組合을 結成하였고 3月 15日에는 2,000餘名의 小作農民이 參加한 가운데 農民大會를 開催하여 小作農民들의 團結力을 誇示하고 그들의 要求條件을 提示하여 그에 對한 決議를 促求한 바 있었다. ⁽⁵⁷⁾

1924년에 小作爭議運動은 全羅道에서 順天地方과 光州地方 및 求禮地方에서 매우 活潑하게 展開된 바 있었다. 光州郡 牛峴面에서는 1924年 1月 地主들이 小作權을 剝奪하여 다른 새로운 小作人에게 賦與하고 事前에 公課金を 받으려 하였기 때문에 小作權의 無理한 移動에 激憤한 700餘 農民들이 1924年 4月 2日 光州 小作人聯合會에 會集하여 一時에 騷動이 發生될 듯한 處地에까지 놓이게 되었으며 드디어는 小作人會에 의한 強制 共同耕作을 決定한 事件도 있었다. 求禮郡에서는 1924년에 土旨面・馬山面・外山面 등지에서 小作權移動을 反對하는 爭議가 자주 일어났었다. 그러함에 있어서 小作農民들은 小作權의 回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共同苗床, 共同施肥, 共同移秧 등으로 集團의인 共同小作을 強行한 바 있었다.

(49) 『東亞日報』, 1923年 3月 28日字.

(50) 『東亞日報』, 1923年 3月 19日字.

(51) 『東亞日報』, 1923年 6月 4日字.

(52) 『東亞日報』, 1923年 1月 24日字.

(53) 『東亞日報』, 1923年 1月 26日字.

(54) 『東亞日報』, 1923年 1月 29日字.

(55) 『東亞日報』, 1923年 1月 30日字.

(56) 『東亞日報』, 1923年 2月 7日字.

(57) 『東亞日報』, 1923年 3月 23日字.

1924년에 慶北地方에서 또한 小作爭議運動이 活潑하게 進行되고 있었는데 특히 安東郡 典山小作會와 榮州郡의 豊基小作組合의 活動은 매우 活潑하게 展開되었다. 安東郡 典山小作人會는 1924年 4월에 惡德地主와의 爭議 때문에 春耕을 하지 못한 會員小作人을 위해서 後援糧穀을 거두어 주는 運動을 展開하기도 하였으며⁽⁵⁸⁾ 또한 7월에는 春收作物의 小作料는 2割 以內로 하고 秋收作은 畓 4割, 田 3割 5分으로 하기 위한 鬪爭을 猛烈히 展開한 바 있었다.⁽⁵⁹⁾ 그리고 이 過程에서 春收作物 小作料 2割 以內 條件을 위해 鬪爭하던 農民의 小作權을 剝奪한 地主가 있어 이에 對抗하여 農民들이 共同으로 強制小作을 위한 農耕作業을 하다가 業務妨害罪의 名目으로 拘束된 事件도 있었다.⁽⁶⁰⁾

黃海道地方에서는 1924년에 水害, 旱害 및 蟲害 등의 災害로 말미암아 收穫이 平年の 折半 程度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不拘하고 平年과 똑같은 小作料를 納付하라는 것에 對하여 載寧郡 北栗面 一帶의 農民들이 小作料를 그렇게 많이 納付하고서는 生計維持가 困難하므로 이를 減下하여 주지 않는다면 小作料를 納付할 수 없다고 小作料不納同盟을 일으키고 東拓出張所 뜰에서 每日 數百名이 雲集하여 그들의 要求의 貫徹을 懇請하게 되었다.⁽⁶¹⁾ 그러나 東拓出張所側은 本社에서 決定할 事項이므로 自己들로서는 이를 適切히 措處할 수 없다는 口實下에 農民들의 要求가 貫徹되지 않았음에 小作農들은 10月 30日 밤 載寧江을 건너 沙里院에 있는 東拓支社로 몰려가서 籠城鬪爭을 展開한 바 있었다. 즉 當初에는 200餘名の 農民들이 東拓支社 앞뜰에서 籠城에 들어갔는데 會社側은 이들의 要求를 들은 체도 아니하고 小作料를 收納치 않으면 小作權을 剝奪하겠다고 威脅하며 또한 日本人 移民을 시켜 小作地에 栽培되어 있는 벼를 刈取하고 小作農의 집에 있는 벼에는 東洋拓殖株式會社라는 名義表의 貼付로서 맞섰다. 이에 따라 農民들은 陳情書를 京城에 있는 東拓本社와 朝鮮總督府에 送付하고 그에 對한 交渉을 進行시킨 바 있었다.⁽⁶²⁾

1924年 11月 5일에 黃海道 鳳山郡 舍人面에서는 小作人 200餘名이 東拓 沙里院 支社에 雲集하여 北栗面 小作人의 籠城에 加勢한 바 있었고 그들은 北栗面 小作人들이 解散한 뒤에도 支社長이 北栗面에서 돌아온 11月 12日까지 籠城을 繼續하였으며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要求條件⁽⁶³⁾을 提示한 바 있었다. 즉 ① 小作料 納入 貫數는 正味 25貫으로 할 事, ② 小作料 納入告知書에 記載 調定高에 대하여 5割을 減할 事, ③ 小作料 繩臥

(58) 『東亞日報』, 1924年 4月 14日字.

(59) 『東亞日報』, 1924年 8月 17日字.

(60) 『東亞日報』, 1924年 10月 9日字.

(61) 『東亞日報』, 1924年 11月 1日字.

(62) 『東亞日報』, 1924年 11月 2日字.

(63) 『東亞日報』, 1924年 11月 10日字.

法를 廢하고 從來의 糞俵로 할 事, ④ 糧穀과 肥料代金は 3個年 年賦償還케 할 事, ⑤ 小作人 總代를 廢止할 事, ⑥ 定租契約을 從前의 數量과 如히 復舊할 事, ⑦ 斗量人의 手數料를 嚴禁할 事, ⑧ 小作地를 保存하여 移民을 絶對로 廢止할 事, ⑨ 共同小作制度를 廢止할 事 等等이었다.

1924年 2月 19日 黃州郡 一帶에 있는 朝鮮興業株式會社의 小作農民들은 小作料의 引上을 取消하라는 要求를 貫徹시키기 위하여 朝鮮興業支社가 있는 黃州邑으로 雲集하였다. 이 情報를 入手한 警察은 길목에서 農民들의 集合을 阻止하려 하였으며 小作人 代表 劉采斗를 引致하여 浮浪罪로 取調를 하여 그를 威脅하는 事態가 發生하였다. 이에 激憤한 農民들은 黃州邑內에 集結하여 一大 示威를 展開한 바 있었고 그들은 會社側에 다음과 같은 要求條件⁽⁶⁴⁾을 提示한 바 있었다. 즉 ① 小作料는 20年 前의 小作料대로 받을 것, ② 그리고 그 以後에는 더 增加치 말 것, ③ 既히 執行된 分은 無條件 返納할 것, ④ 今年의 小作料는 5割로 減하여 줄 것, ⑤ 小作料는 從來와 같이 豆類에만 限定하지 말고 그 밖에 栽培한 農作物로 할 것, ⑥ 小作料는 風具에 調製되지 않는 狀態의 것으로 收納토록 할 것, ⑦ 斗는 그 전과 같이 그 위에 2·3次나 오르게 하지 말 것, ⑧ 小作人에 對한 人格을 지나치게 無視치 말 것 등이었다.

1924年 4월에 京畿道 安城面에서는 地主가 無理하게 小作料 運搬賃을 徵收하며 또한 負擔을 強要하는 處事에 대하여 小作農民들이 一齊히 地主가 묵고 있는 舍營의 집에 몰려가서 聲討大會를 하여 地主로 하여금 이를 是正 謝過케 한 일이 있었으며 또한 高陽郡 龍岡面에서는 從來에 驛屯土로 되어 있던 垆地를 日本人이 買入하고 無理하게 60倍나 되는 稅세를 要求하였기 때문에 이에 抗議하는 小作爭議가 發生되었다.⁽⁶⁵⁾

1924年 11月에는 慶北 達城郡 化원面 農民들이 無理한 小作料 要求에 反對하여 不納同盟을 맺고 秋收를 拒否하는 小作爭議가 있었으며, 1924年과 1925년에는 黃海道 一帶에서 大小의 여러가지의 小作爭議가 發生되어 全國에서도 이 地方이 가장 熾烈하였으며 黃海道地方의 爭議는 日本人 地主를 對象으로 한 鬭爭이 많았다.

1920年代 初期에 小作農民들이 自己의 權益을 擁護 增進하기 위하여 小作人組合, 小作人同盟, 小作人會, 小作人共濟會, 農民會 등등 各樣各색의 各稱의 團體를 組織함에 있어서 가장 큰 影響을 준 것은 朝鮮勞動共濟會⁽⁶⁶⁾이었다.

朝鮮勞動共濟會 晉州大會에서는 1921年 9월에 있었던 釜山 埠頭勞動者들 5,000餘名의 大

(64) 『東亞日報』, 1924年 2月 20日字.

(65) 『東亞日報』, 1924年 11月 5日字.

(66) 金森襄作, 「朝鮮勞動共濟會について」, 『朝鮮史叢』, 第3號(1980年 6月), p. 252.

罷業과 또 이에 뒤따른 釜山, 影島方面 勞動者들의 罷業이 成功的으로 進行된 데 힘입어 小作農民들의 團結된 鬭爭이 切實함을 깨닫고 1922年 3월에 幹部會議을 召集하고 小作問題를 인식, 우선 具體的인 조사에 着手하도록 調查委員들을 選定하였으며, 이 調查委員들은 小作農의 問題를 具體的으로 調查하며 郡內 各地에서 會員의 吸收에 努力하고 夜學講習所 등을 통하여 啓蒙事業을 展開하였고 同年 9月 4日에는 1,000餘名の 小作人들이 晉州青年會에 모여서 小作勞動者를 開催하는 데 成功을 얻기에 이르렀다. 이 大會에서 小作人의 團結을 促求하기 위한 實況報告와 講演會를 가져 드디어 여기에 參與한 農民들은 小作人의 權益을 擁護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決議案을 採擇⁽⁶⁷⁾하기에 이르렀다. 즉 ① 從來의 指定小作料(定租)를 廢止할 것, ② 小作料는 生産의 折半 分配로 할 것, ③ 地稅 및 附加稅는 地主負擔으로 하며 舊는 그 全部를 小作人의 所得으로 할 것, ④ 小作料의 運搬은 地主의 所在地 1里 距離內에서는 小作人 負擔으로 하고 1里 以上부터는 地主負擔으로 할 것, ⑤ 地主 및 舍賚 등에 物品贈與의 習慣을 全廢할 것, ⑥ 地主에 對한 無償勞役을 全廢할 것, ⑦ 斗稅를 全廢할 것, ⑧ 小作料 取得에는 斗斛을 使用할 것, ⑨ 本決議事項에 違反하는 者는 相互扶助를 하지 아니하며 斷交할 것, ⑩ 本決議 實行 및 調查를 위하여 共濟會 支會內에 調查委員 20名을 두어 各面을 巡廻케 하고 小作人 對 地主間에 立會하에 實行케 할 것, ⑪ 地主로서 本決議事項을 反對하거나 無過失의 小作人으로부터 小作地를 빼앗는 者와는 斷交 排斥할 것, ⑫ 本決議는 今年 秋收期로부터 實施할 것 등이었다.

全北 井邑郡에 있는 朝鮮勞動共濟會 井邑支會에서는 小作人組合을 組織하기 위하여 各方面으로 努力한 結果 7月 現在 1,200餘名이 加入하기에 이르렀다. 小作農民들의 團體活動이 뚜렷해지자 地主들은 이에 對應하는 地主會를 開催하고 小作人들과의 摩擦을 避하기 위한 對策을 協議한 바 있었으며⁽⁶⁸⁾ 日帝의 官廳當局은 朝鮮勞動共濟會의 宣傳, 組織活動을 妨害하는 措置를 取하기도 하였다.⁽⁶⁹⁾

朝鮮勞動共濟會의 地域的 組織結成이 擴散됨에 따라서 地域的 聯合을 形成하고 全國的인 聯盟體의 結成이 이룩되게 되었다. 그것이 곧 朝鮮勞動聯盟會이다. 그리하여 晉州勞動共濟會를 비롯하여 井邑勞動共濟會, 豊基小作組合, 淸津勞動共濟會 등등이 이에 合流 吸收되었는데⁽⁷⁰⁾ 朝鮮勞動聯盟會의 綱領⁽⁷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吾人은 社會 歷史의 必然한 進化理法에 의하여 新社會 建設을 企圖함,

(67) 朝鮮總督府 警務部, 『朝鮮治安狀況』, 1922, pp. 89-90.

(68) 『東亞日報』, 1922年 10月 20日字.

(69) 『東亞日報』, 1922年 9月 22日字.

(70) 『東亞日報』, 1923年 4月 29日字.

(71) 『東亞日報』, 1922年 10月 20日字 및 21日字.

둘째, 吾人은 共同的 힘으로 生活을 改造키 위하여 此에 關한 知識의 啓發 및 知識의 進歩를 企圖함,

셋째, 吾人은 現社會의 階級的 意識에 의하여 一致團結함을 企圖함 등등의 것이었다.

全羅南道 勞動聯盟會는 1924年 3月 4일부터 이틀 동안 光州興學館에서 49個의 勞農團體 代表 100餘名이 參席하여 創立總會를 開催하여 規則과 宣言文을 採擇 通過시키고 任員을 選出한 바 있었고⁽⁷²⁾ 그 후 同聯盟會는 加盟團體 78個團體로 擴大된 바 있었다.⁽⁷³⁾

그리고 南鮮勞農同盟會는 慶南勞動運動懇親會와 全南勞農聯盟에 參加한 勞動團體들이 中心이 되어 南鮮一帶의 勞動團體가 團結하여야 한다는 目的下에 結成 組織되었고 創立大會는 1924年 3月 9일부터 2日間(年一日은 萬鏡館, 第二日은 大邱勞動共濟會館에서) 開催하였는데 當時에 總加盟團體數는 141個團에 이르러 있었고 이들이 採擇한 綱領⁽⁷⁴⁾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즉

첫째, 우리는 團結의 힘으로 勞動階級⁽⁷⁵⁾의 解放을 期함,

둘째, 우리는 完全無缺한 社會의 實現을 期하는 동시에 刻刻의 福利增進과 生活向上을 圖謀함,

셋째, 勞動運動의 總力을 集中하기 위하여 全國的 總團結의 促成을 期함 등등의 것이었다.

그리고 當時 創立大會에서 討議된 바 있었던 主要事項⁽⁷⁶⁾들로서는 ① 勞動民의 相互關係에 關한 件, ② 各地方 小作狀況調査에 關한 件, ③ 各地의 小作團體 內容調査의 件, ④ 小作團體의 組織에 關한 件, ⑤ 異流小作團體에 關한 件, ⑥ 小作條件에 關한 件, ⑦ 小作人의 教養에 關한 件, ⑧ 農業改良에 關한 件, ⑨ 副業獎勵에 關한 件, ⑩ 生産과 消費組合에 關한 件, ⑪ 農村雇傭에 關한 件, ⑫ 東洋拓殖株式會社에 關한 件, ⑬ 郡農會에 關한 件, ⑭ 青年團體의 組織에 關한 件, ⑮ 青年教養에 關한 件, ⑯ 異流青年團體에 關한 件, ⑰ 女性團體의 組織에 關한 件, ⑱ 女性教養에 關한 件 등등이었다.

이로부터 勞動共濟會의 組織 自體가 勞動者와 小作農民의 組織結束을 強化케 하는 바탕이 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鬭爭目的이 大部分 小作農民問題를 主軸으로 되어 있었다는 內容을 살펴본 바 있다. 小作爭議 自體가 鬭爭의인 性格을 지니었다는 歷史的 定立은 다음의 몇가지 吟味 檢討에서 可能케 되는 것도 事實이다.

(72) 『東亞日報』, 1924年 3月 8日字.

(73) 坪江汕二, 『朝鮮民族獨立運動秘史』, 1938, p. 128.

(74) 『東亞日報』, 1924年 3月 10日字 및 14日字.

(75) 勞動階級이란 勞動者 및 農民을 包含한 것임.

(76) 『東亞日報』, 1924年 5月 22日字.

沃溝郡 瑞穗面 瑞穗里에 있는 二葉社農場은 韓國人 小作人들에게 75%의 小作料를 現物로 納付할 것을 要求한 바 있었고 이와 같은 農場側의 要求에 對하여 沃溝農民組合의 委員長인 張介郁을 비롯하여 幹部들이 農場側을 訪問하여 45%를 減免할 것을 要求하는 強硬한 態度에 부딪치자 瑞穗面 警察官駐在所는 다음날 새벽에 農民組合支部長인 張台成을 檢擧하기에 이르렀다. 이 消息을 接한 沃溝農民組合의 瑞穗面支部의 幹部 36各은 駐在所에 몰려가서 支部長의 釋放을 要求하였으나 도리어 群山警察署 高等係刑事隊를 總動員하여 支部長을 비롯하여 釋放을 要求하고 있는 幹部全員을 無條件 檢擧하는 處事를 벌린 바 있었다.⁽⁷⁷⁾ 沃溝郡 瑞穗面 支部長과 36名의 農民組合幹部들이 檢擧되었다는 消息을 알게 되자 500餘名의 小作人들은 瑞穗面 駐在所와 監洪駐在所에 抑留되고 있는 組合支部幹部들을 奪還하였다. 小作料의 紛爭이라기 보다는도 群山警察署와 瑞穗農民組合員들의 實力對決의 樣相을 나타낸 바 있었고 張台成을 비롯한 瑞穗面 農組支部幹部들은 群山署로 移送되어 高等係刑事隊의 取調를 받게 되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小作爭議를 治安維持法의 次元에서 다루는 態度이었다. 拘束者들에게 給食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警察署에 몰려온 500餘名의 組合員들을 消防隊員을 動員하여 解決시키는 處事마저 벌리게 되는 事態의 것이었다.⁽⁷⁸⁾ 沃溝郡에는 二葉社農場 뿐만 아니라 興業農場·大合農場·態本農場 등등이 集結된 日本人 農場의 中樞地域이었으며 이들 巨大農場이야 말로 植民地 韓國에 뿌리 박은 日本人 勢力의 象徴이었고 群山府와 沃溝郡을 管理하는 群山警察署는 日本人 農場勢力의 忠犬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韓國人 小作農들을 隸農狀態에 억누르는 것만이 社會秩序를 維持하는 根幹이 되어 있었다. 小作料의 高率負擔에 抗拒하는 運動도 隸農의 身分에 어긋난 일로 判斷되었기 때문에 小作爭議를 農民組合運動이라는 그릇된 名目下에 彈壓을 敢行하고 있었다.⁽⁷⁹⁾ 沃溝小作爭議事件은 植民地 韓國에서 처음으로 近代의 小作爭議의 性格과 形態를 나타낸 事件이며, 農民組合運動의 萌芽로 評價될 수 있고 沃溝小作爭議事件은 비록 日本人 農場勢力을 守護하는 植民地政策의 實踐集團이었던 朝鮮總督府의 官權으로 餘地 없이 粉碎되고 말기는 하였으나 日本人 農場에 隸屬된 韓國人 小作農들이 지니고 있었던 隸農의 身分에 對한 組織的인 抗拒運動이었다는 事實에 비추어 忘却할 수 없는 歷史的인 意義를 지니는 것이 되고 있었다.⁽⁸⁰⁾ 그 밖에 元來 社會問題로서의 小作問題라는 것은 小作關係의 決定變更에 關하여 地主·小作人間에 小作爭議가 頻繁하고 또한 爭議가 顯著히 階級鬭爭的인 色彩를 띠

(77) 『東亞日報』, 1927年 11月 27日字.

(78) 『東亞日報』, 1927年 11月 29日字.

(79) 學術院, 『學術講演要約集』(人文科學部), 1980, p. 27.

(80) 學術院, 『學術院會報』, 第21輯, 1980, p. 183.

고 있었다.⁽⁸¹⁾ 그리고 小作爭議가 團體化하여 集團의 方法에 의한 運動展開가 激增하고 따라서 階級鬭爭을 激增시키고 있었다.⁽⁸²⁾ 이상에서 小作爭議運動인즉 集團의이며 組織의인 鬭爭運動 및 階級運動 그리고 日帝抗拒運動의 一環으로 性格지을 수 있게 된다.

初期의 小作爭議는 主로 日人大農場 및 地主를 相對로 하는 것이었다. 平北 下二農場, 慶南 迫間農場, 全南北의 多木農場, 熊本農場 등등에 있어서의 大爭議가 있었고 그것은 3.1 運動의 昂揚된 民族運動의 물결을 따라 經濟鬭爭의 性格과 함께 民族運動의 性格을 濃厚하게 하고 있었다.⁽⁸³⁾ 日帝下 小作制度의 實際運營에 隨伴하는 矛盾點에서 發生된 小作爭議는 日帝의 植民地政策의 遂行過程上 社會主義思想을 精神的인 基底로 한 農民들의 排日感情에서 비롯된 抗日運動의 것이었다.⁽⁸⁴⁾ 日帝下 地主·小作人의 關係는 地主에 對한 平等한 賃貸契約으로서 小作契約이 成立되는 瞬間부터 耕作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土地의 賃貸料인 小作料만을 納付하는 것이 原則이었으나 日帝下 地主·小作關係는 人權上 不平等하여 小作人의 生活保障은 물론 從來의 傳統的인 生活保障마저 奪取하여 民族問題를 包含한 變形된 性格의 것으로 發展하게 이르렀다.⁽⁸⁵⁾ 이상에서 日帝下 農民運動의 母體로서의 小作爭議運動은 3.1運動과 第1次 世界大戰以後 民族主義思想을 媒介로 學生運動 및 勞動運動과 더불어 民族運動과 反帝運動으로 發展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

1920年頃부터는 歐洲大戰後 一般社會思想의 變遷 影響에 있어서 小作爭議運動은 農村社會에 있어서 恒常의 現象이 되고 있었다.⁽⁸⁶⁾ 그리고 小作爭議는 歐洲大戰後의 社會思想變動의 影響下에 每年 小作爭議件數를 增加시키고 있었다.⁽⁸⁷⁾ 歐洲大戰後 一般 社會思想의 變遷과 日本에서의 各種 社會運動의 勃興에 刺戟되어 朝鮮에 있어서도 各種의 社會運動이 勃發하여 小作爭議問題를 促求하며 蠢動케 한 것이었다.⁽⁸⁸⁾ 小作人의 爭議手段으로서의 團體的인 爭議인 小作爭議運動은 團體의 對立에 隨伴하는 바의 小作料의 不納同盟 및 不耕作同盟과 같은 것이었고 또한 爭議關係者大會를 開催하여, 宣傳文書를 配布하며 學會兒童의 盟休를 圖謀하고 그 밖에 一般社會에 呼訴하는 手段을 講究하여 示威行動을 敢行하고 마침내는 直接行動으로서 暴行, 脅迫, 騷擾 및 公務執行妨害 등등의 刑事事件으로까지 擴大된 社會思想變遷에 副應된 內容의 것이 되어 있었다.⁽⁸⁹⁾ 世界 第1次大戰以後에 몰고 온 新思潮

(81) 澤村 康, 『農業政策』(上卷), 1932, p. 357.

(82)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1944, p. 648.

(83) 全錫淡·金漢周·李基洙, 『日帝下の 朝鮮社會經濟史』, 1947, p. 165.

(84) 姜薰德, 『日帝下 小作爭議의 性格에 對한 一考察』, 1980, p. 2.

(85) 『東亞日報』, 1926年 12月 22日字.

(86)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農地年報』, 第一輯, 1940, p. 5.

(87) 田邊勝正, 『土地制度研究』, 1938, p. 357.

(88)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農地年報』, 第一輯, 1940, p. 31.

(89)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1944, pp. 665-666.

에 따라서 小作爭議가 發生하게 되었고 小作爭議 發生件數는 1920년에 15件이고 1922년에 24件이었던 것이 1923년에는 176件으로 增加되었으며 參加人員도 9,060名으로 增加하였고 이어 다음 해에는 164件이 發生하였으며 參加人員도 6,929名을 헤아리게 되었다.⁽⁹⁰⁾ 또한 小作爭議는 單純한 經濟爭議의 範圍를 벗어나서 思想的 民族的 鬭爭과 結合되어 極히 複雜 多岐한 가운데 全國에 蔓延되고 있었다.⁽⁹¹⁾ 이상에서 小作爭議運動인즉 곧 歐洲大戰 以後 急激하게 膨大된 民族自決思想과 社會思想意識의 一般的 發展進步에 照應되어 이룩된 結果라 볼 수 있다.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은 土地로부터 遊離된 小作人 自身들의 土地에 對한 經濟的 位置에 對한 再認識에서 비롯된 運動이며 經濟的 不安을 打開하기 위한 組織的인 運動이었을 뿐만 아니라 民族的 農民自立意識의 成長發展에서 비롯된 運動이었다.⁽⁹²⁾ 小作爭議의 發動은 3.1 運動 以後의 民族運動이 農民·學生 그리고 勞動者를 中心으로 展開된 바 있었고 이에서의 民族運動은 舊指導層의 運動拋棄와 學生 및 勤勞大衆을 土臺로 한 民族的 組織의 成長에 의하여 그 運動이 자못 本軌道에 오르는 가운데 組織的이며 強韌한 自主運動으로 發展되고 있었다.⁽⁹³⁾ 從來에는 社會思想家의 指導에 의한 爭議가 多大數를 占하고 있었던 것이나 이제 거의 小作人 自身에 의한 爭議로 轉化되고 있는 傾向에 있었다⁽⁹⁴⁾. 이상에서 小作爭議 運動은 農民의 自律性에 立脚한 農民自主運動의 性格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IV. 要 約

첫째, 農民運動의 母體로서의 小作爭議運動展開는 小作權移動의 反對 및 小作料의 低減 要求, 그리고 小作期間의 短期化 改善條件의 側面에서 이룩되고 있었다.

둘째, 小作爭議運動의 展開는 小作農民 스스로의 權益을 擁護 增進하기 위하여 小作人組合, 小作人同盟, 小作人共濟會 및 農民會 등등 各樣各色의 團體組織結成의 바탕에서 이룩되고 있었다.

셋째, 小作爭議運動의 展開는 組織的인 鬭爭運動 및 階級的 對立運動의 次元에서 이룩되고 있었다.

(90) 學術院, 『學術院會報』, 第21輯(1980), p. 180.

(91) 朝鮮農會, 『朝鮮農業發展史』(政策編), 1944, p. 531.

(92) 姜薰德, 『日帝下 小作爭議의 性格에 對한 一考察』, 1980, p. 3.

(93) 崔虎鎮, 『韓國經濟史』, 1970, p. 254.

(94) 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編, 『朝鮮經濟의 研究』(津曲藏之承, 「朝鮮に於ける小作問題의 發展過程」), 1929, p. 140.

네째, 小作爭議運動은 3.1運動과 第1次 世界大戰以後 民族主義思想을 媒介로 學生運動 및 勞動運動과 더불어 民族運動과 日帝抵抗運動의 一環으로 展開되고 있었다.

다섯째, 小作爭議運動은 歐洲大戰以後 社會思想意識의 一般的 發展進歩에 照應되어 展開되고 있었다.

여섯째, 小作爭議運動의 展開는 農民의 自律性에 立脚한 農民自主運動의 一環으로 展開되고 있었다.